

(별지 제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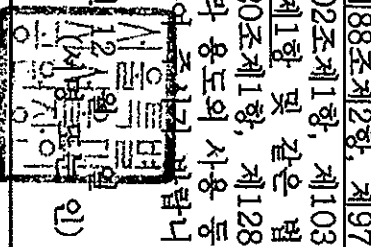
관공부서	용도의 사용(양수도임대) 승인신청(승인)서			처리 기간
담당과장	□양도세출적용물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매제한물품 □분할납부물품			4 일
담당자				
연락처				
상 호	서울대공원			
대표자 성명	안영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번호	138-83-00900
주 소	경기 파천시 대왕원광장로 102(막계동)			사업의 종류
1. 양수도인 명세				

양도 인	상 호	서울대공원		통관고유부호	서울 대 공 3842014
	대표자 성명	안영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번호	138-83-00900
양수 인	주 소	경기도 파천시 대왕원광장로 102(막계동)		사업의 종류	동물원
	상 호	(주)케이케이프도먼지인 조석재		통관고유부호	케이케이111P016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114-86-91968
주 소		경기 일산 장항동 756-1 4층 401호		사업의 종류	도매, 동물

2. 용도의 사용(양도, 양수, 임대) 물품 명세					
HS번호	품명·규격	수량	당초감면 (분납)별조항	판매감면(분납)액 (적용용도세율)	이미 납부한 관세액
0106.12- 2000	SPOTTED SEAL	2U	A09000010201	관세:731,770원 부가세:987,890원 계:1,719,660원(8%)	관세:182,940원 부가세:246,970원 계:429,910원
통관지 세관명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	당초 설치장소	당초용도	
안양세관	2014/11/13	43835-14-30143 7U	서울대공원	화물연구용품(동물원 표본)	

3. 승인 신청 이유	4. 변경후 사항	설치장소 (부서명, 전화번호)	새로운 용도
양도, 양수 (※ 용도의 사용)	양수인의 감면 (분납)별조항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의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용도의 사용(양수도, 임대)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



안양 세관장 귀하		신청인	2014년 11월 13일	양수인	2014. 12. 16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한함)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3. 양수인의 판매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요건 확인서류(별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계수를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의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양수도 승인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